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668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서다빛(공판)
판 결 선 고 2026. 5.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B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해자는 C으로 철구조 상세 설계, 제작을 위한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양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¹⁾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누구든지 저작권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6.부터 2025. 1. 30.까지 양산시 D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저작권 프로그램인 'B' 프로그램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복제, 사용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임의제출), 관련 서류 6장

1. 고소장

1. 미합중국 저작권청 프로그램 등록 확인 자료, B 프로그램 소개 자료, C의 크랙 정보, 한국인터넷진흥원 IP 주소 조회결과 자료, 통신사 사실조회결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인철 _____